

□ 관련규정

- 「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제77조(공사의 분할계약 금지)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동일 구조물공사 또는 단일공사로서 설계서 등에 따라 전체 사업내용이 확정된 공사는 예외사항을 제외하고 이를 시기적으로 분할하거나 공사량을 분할하여 계약할 수 없다고 규정
- 「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」 제1장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5항(분할계약의 금지) '라' 항목에 따르면 계약담당자는 용역·물품 계약에 대하여도 단일사업을 부당하게 분할하거나 시기적으로 나누어 체결하지 않도록 규정

□ 지적사항

사례1> 산소포화농도측정기 등 단일사업 내 동일한 의료기기를 구입하면서 같은 날 2개 업체에 금액을 나누어 별건으로 구입하는 방식으로 계약부서에 의뢰 생략 후 분리 지급

사례2> 전자동어닝천막세트 등 단일사업 내 동일한 물품을 구입하면서 동일 업체에 각각 다른 날 금액을 나누어 분할 구입하는 방식으로 계약부서에 의뢰 생략 후 분리 지급

사례3> 업무 책자 등 단일사업 내 동일한 물품을 구입하면서 특별한 이유 없이 1일 차이로 2회에 걸쳐 나누어 분할 구입하는 방식으로 계약부서에 의뢰 생략 후 분리 지급

사례4> 디지털복합기 소모품 등 단일사업 내 동일한 물품을 구입하면서 물품구입으로 계약해야 함에도 200만원 이하로 분할구입하는 방식으로 일반지출결의서를 사용하여 집행

□ 업무처리 시 유의 사항

- 동일한 단일사업을 임의로 분할계약 하지 않도록 유의할 것